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3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3. 9. 16(월) 10: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경재 위원장
김충식 부위원장
홍성규 상임위원
김대희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3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19명이 신청 하였습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경재 위원장

- 2013년 제3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회의록 확인

○ 이경재 위원장

- 지난 제32차 및 제33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경재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이 모두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2013-34-130)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정렬 기획총괄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렬 기획총괄담당관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결주문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경과사항입니다. 지난 7월 시행령 개정령안을 위원회에 보고한바 있고, 7~9월 초에 걸쳐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째, 방송사업자별 분담금 징수율 결정주체 세분화입니다. 지상파 및 중편·보도 PP의 분담금 징수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고, 종합유선·위성방송·IPTV 및 홈쇼핑 PP의 분담금 징수율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둘째, 분담금 면제 소관 부처의 명확화입니다. 분담금 면제 대상 사업자인 위성방송과 IPTV의 소관은 미래창조과학부이므로, 면제주체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분담금 납부의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조항의 신설입니다. 현행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분담금 납부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분담금 과·오납금 환급조항을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 요건 변경 등입니다. ‘모든 위원중에서’ 임명하는 위원장을 ‘방통위와 미래부 당연직 위원중에서’ 임명토록 변경하고, 기금위탁관리기관의 기관장을 당연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위탁기관의 담당 직원 임명절차 개선입니다. 기금 위탁기관 담당 직원 임명절차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오늘 의결해 주시면 9월 하순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10월에 공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기본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외의 조직 분리에 따른 요식적인 조문 정리에 불과하므로 다음 안건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주)엘지유플러스의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3-34-131 ~ 133)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나>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주)엘지유플러스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안건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음성, 데이터 등의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도매제공사업자는 알뜰폰사업자와 도매제공 협정을 체결한 후 미래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SKT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되어서 매년 도매대가를 재산정하여 미래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통사의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이동전화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알뜰폰사업자의 수는 CJ헬로비전 등 현재 28개사가 있으며, 알뜰폰가입자의 수는 8월 기준으로 204만명으로, 전체 이통통신 가입자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사실조사 결과, 먼저 협정과 다른 부당한 도매대가를 정산한 사실입니다. ‘12년 1월~’13년 6월 기간 동안 이동전화 3사와 알뜰폰사업자간 도매제공 대가 정산내역에 대해 조사한 결과, SKT는 ‘13년 4월부터 SK텔링크 등 9개 알뜰폰사업자에게 MMS 및 영상통화 도매대가를 협정과 다르게 높은 대가를 적용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LGU+는 ‘12년 6월부터 스페이스네트 등 3개사에게 정액데이터 도매대가를 협정과 다르게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협정입니다. 이동전화 3사와 알뜰폰사업자간 체결한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관련 협정내용 등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KT와 LGU+는 알뜰폰사업자에 대해 타 이동전화사업자와의 도매제공 계약체결을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KT는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과 무관한 ‘원가이하 상품판매’, ‘고객 동의없는 의무기간 설정’ 등을 협정해지 사유에 포함하거나 자사의 유·무선통신 영업 위탁대리점 겸업을 차별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LGU+는 1GB 정액데이터를 동일한 도매대가로 제공하여야 함에도 알뜰폰 선·후불 가입자를 구분하여 다르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라> 위법성 판단입니다. 먼저 SKT 및 LGU+가 알뜰폰사업자와 체결한 협정과 다르게 도매대가를 청구·정산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

령 제42조제1항 [별표4] 2호 - 나목의 “협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로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KT와 LGU+가 알뜰폰사업자에게 타 이동전화사업자와의 도매 제공 계약체결을 제한하고, KT가 도매제공과 무관한 ‘원가이하 상품판매’ 등을 협정해지 사유에 포함하거나 유·무선통신서비스 위탁대리점 겸업을 알뜰폰사업자에게 차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협정, 그리고 LGU+가 1GB 정액데이터를 동일한 도매대가로 제공하지 않고 선·후 불가입자를 구분하여 다르게 제공하고 있는 협정 등은 관련법에 따라 금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마> 시정조치(안)입니다. 상기 보고드린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금지행위의 중지,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그리고 제5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협정과 다르게 도매대가를 정산한 행위 SKT와 LGU+ 경우 도매제공 관련 위반행위가 처음인 점, 부당이익이 아주 미미한 점, 조사 착수 직후에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한 점, 그다음에 위반소지가 있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협정’(KT, LGU+)에 대해서도 알뜰폰사업자와 협정변경을 현재 협의 중인 점을 고려하여 KT 및 LGU+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협정내용을 변경토록 하고, 이통 3사에게는 금지행위의 중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토록 명령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시정조치(안)에 나오는 ‘부당이익이 미미한 점’, ‘조사착수 직후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당이득이 각각 대략 얼마씩입니까?

○ 장대호 통신시장조사과장

- 대략 SKT의 경우 352만원 정도 됐었고, LG유플러스의 경우 36만원 정도 수준으로 밝혀졌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전부 다 원상회복한 것입니까?

○ 장대호 통신시장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알뜰폰 관련해서 제재하는 것이 처음이지요? 처음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처음 조사했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지금 한 200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에서 듣기로는 이미 통신 3사가 알뜰폰이 치고 올라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신경 쓸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매대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견제들이 시작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입니다. 이것이 처음이고 미미하니까 이번에는 행정조치만 하고 마는 것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동의하겠는데 만약 이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는 감경조치 없이 아주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이번에 한 번 이렇게 경미한 점을 고려해서 과징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 **홍성규 상임위원**

- 왜냐하면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꽤 있습니다. 알뜰폰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통신 3사가 슬슬 조여 오는 느낌을 갖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통신 3사도 치고 올라오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데도 있다는 것을 들은 바가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래도 역시 통신 3사가 잡이지 않습니까? 통신 3사가 커 오는 알뜰폰을 과도하게 견제하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이 행정조치를 하면서 다음부터는 만약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강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을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도 시장을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이것이 첫 조사이기 때문에 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의미들이 지금 아주 중요해진 시점이라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 여기에서 내부거래를 예를 들어 SKT와 SK텔링크, KT와 KT파워텔이 있었지요? 그런 자회사, 손자회사 이 계열에서 부당이익이나 부당편익 그리고 다른 비계열 사업자들의 차별대우, 이 부분들을 이제는 집중적으로 봐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0만이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한 덩어리로 보면 제4통을 연상할 정도로 강하게 치고 가줘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 일관되게 알뜰폰이라는 사업들을 강하게 추진해 왔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철저하게 알뜰폰 사업자들을 보호해 주는 과정들로 접어드는 것이 우리의 활동과 의무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조사결과에서 나타나는 통신 3사의 부당한 행태들이 절차적 실수 정도로 우리가 봐주는 것인데, 시장에서 중요한 경쟁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 심해지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치명적인 것은 내부자간에 있어서 부당편의와 부당이익들을 주면서 도태시켜 나가는 과정들이 어느 사업자든지 마케팅 과정에서 상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대회 상임위원**

- 알뜰폰은 기존에 지상파 3사로 과점을 이루고 있는 통신시장에 대해 경쟁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서 출발한 제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통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시장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렇게 점검해 본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봅니다.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들은 사무국에서 보고해 주신 대로 그렇게 심각한 것으로 아직은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무국의 제안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알뜰폰 시장을 정부가 계속 주시하겠다는,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확립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지상파DMB 보조국 구축계획 변경에 관한 건 - 안동문화방송(주) 등 2개 지상파DMB 사업자 (2013-34-134)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다> ‘지상파DMB 보조국 구축계획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안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동문화방송(주)의 일월산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보조국과 (주)대구방송의 일월산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보조국의 구축 계획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변경요청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MBC와 대구방송은 각각 일월산 지상파DMB 보조국에 대한 출력을 1~2kW에서 250W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래부 국립전파연구원에 의뢰하여 분석한 전파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안동MBC 지상파DMB 분석결과입니다. 일월산 보조국을 1kW로 구축할 경우에 일월산 일대 안동, 영양, 봉화, 청송 등 4개 시·군의 방송면적률이 현재 50.44%에서 73.85%로 확대되고, 250W로 구축할 경우에는 동일한 지역의 방송면적률이 69.11%로 확대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안동MBC 일월산 지상파DMB 보조국의 출력을 1kW에서 250W로 변경 구축할 경우 예상되는 방송면적률은 73.85%에서 69.11%로 4.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대구방송 지상파DMB의 분석결과입니다. 일월산 보조국을 1kW로 구축할 경우에는 일월산 일대 4개 시·군의 방송면적률이 현재 59.85%에서 77.01%로 확대되고, 250W로 구축하면 동일지역의 방송면적률이 74.42%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대구방송 일월산 지상파DMB 보조국의 출력을 1kW에서 250W로 변경 구축할 경우 예상되는 방송면적률은 77.01%에서 74.42%로 2.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전파간섭여부입니다. 안동MBC와 대구방송의 일월산 지상파DMB 보조국 출력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른 방송사와의 전파간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출력 변경에 따른 4개 시·군의 방송면적률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월산 지상파DMB 보조국을 1kW에서 250W로 변경하여 구출할 경우 방송면적률의 감소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인접되어 있는 타 방송사와 전파혼신이 없는 점, 광고시장 위축으로 경영이 어려운 지역 방송사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출력변경을 허용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고 연말까지 일월산 지상파DMB 보조국 구축을 완료해서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제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지상파DMB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문제가 경영의 악화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안동MBC와 대구방송만 신청을 했는데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처리했으면 합니다. 그동안 지상파DMB에 우리가 계속해서 의무적으로 세계 원래 사업계획대로 하라고 압박을 해 왔었는데 거의 10년이 넘어간 지상파DMB가 여전히 경영 여건 악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계획대로 이 요구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정책국에서 이 안을 올린 것이고,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지 않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축 계획에 있는 지역들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식을 한 번 더 이 의결 이후에 검토해서 조치하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서비스가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하반기에 오늘 보고드린 안동MBC나 대구방송의 지상파DMB 재허가 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사가 이번에 재허가를 받는데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나머지 11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변경의 소요가 있는지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재허가 들어가기 전에 이런 문제들은 사전에 정리하고 재허가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이경제 위원장

- 지난번 지상파 지역방송들과 간담회 때 이런 애로를 많이 들어서 지나치게 부담을 많이 주면서 효과 증진이 별로 없는 부분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라. 2014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 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에 관한 건 (2013-34-135)

○ 이경제 위원장

- <의결사항 라> ‘2014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 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제8항, 동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6의2에 따라서 공익채널 선정과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선정 및 인정 분야입니다. 공익성 방송분야를 전문편성 세부영역으로 구분하고 신청사업자에 대해 해당 분야 적합여부를 중점 심사하여 공익채널 방송사업자를 선정하겠습니다. 공익성 방송분야는 지난 '09년 9월 14일 최초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후 작년에 일부 개정한바 있는데, 주요내용은 사회복지, 과학문화 진흥 및 교육 지원 3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채널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적합한 사업자를 인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선정 및 인정 절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 기준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별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토대로 신청사업자의 제출서류 등을 평가하고 심사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여부, 조건부과 등을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코자 합니다. 공익채널 분야는 방송학계 및 소비자·시청자단체 등 7인으로 구성하고, 장애인복지채널 분야는 공익채널 심사위원 7인에 장애인 분야 1명을 추가하여 총 8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간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선정하고, 전문분야별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채널은 방송법 시행령 제56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사항을 구성하며 기존 심사배점을 적용코자 합니다. 공익채널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청 방송분야에의 적합성 200점, 공정성·공익성 및 실현가능성 300점, 운영계획의 적정성 300점, 공적 책임의식 및 사업수행능력 100점, 시청자불만 및 민원처리 현황 100점, 총 1,000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채널의 경우에는 공익채널의 심사기준을 준용하되 공적 책임의식 및 사업수행능력, 운영계획의 적정성 사항의 배점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나타난 장애인복지채널 심사기준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정 및 인정 기준입니다. 공익채널의 경우 심사결과 총점의

65% 이상, 심사사항별 배점의 40% 이상 획득한 신청사업자 중 방통위가 고시한 사회복지, 과학문화 진흥, 교육지원 3개 분야별로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선정코자 합니다. 장애인 복지채널은 심사결과 총점의 70% 이상 및 심사사항별 배점의 60% 이상 획득한 신청사업자 중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곧 바로 공지한 후 9월 말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10월, 11월에 걸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고, 11월 중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저희가 봤을 경우 크게 보면 공익채널 부분에 장애인복지채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법에 반영되는 과정에 있어서 공익채널 부분은 2004년 방송법시행령 개정 및 2007년 방송법 제70조제8항 신설로 법제화가 됐고, 장애인채널 부분은 2011년도에 법제화해서 작년에 최초로 저희들이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이 현재 규정이 분리됐을 뿐 그 내용상으로 보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익채널 부분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경제 위원장

- 공익채널을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사회복지' 해 놓고 세부영역으로는 '사회적 소수자 복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자도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그냥 허가하면 되는데 별도로 장애인복지채널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공익채널과는 전혀 다른 것처럼 나와 있는데 분류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경제 위원장

- 그렇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이경제 위원장

- 그리고 결과적으로 혜택이 다른 것이 없고 똑같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SO 등 채널사업자들이 1개 이상 의무적으로 방송하도록 하는 혜택, 그 부분만 있을 뿐이니까 결국은 분리해서 선정하더라도 차이는 없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세부영역을 나열했는데 이 내용들이 다 공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방송 전체가 공익성을 다 내놓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입니다. 그런데 좀 억지로 의무적으로 실어달라고 해서 공익채널이라는 것을 특별히 선정 받아서 하려는데, 여기 분류가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과학·문화 진흥'이라고 해서 '예술, 문화 교류' 그러면 드라마도 문화에 들어갈 수 있고, 노래하는 것도 문화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모든 장르 전부 공익에 다 해당이 되어서 그러면 어디는 선정을 해주고 어디는 안 되고 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채널과 공익채널은 어떻게 다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법에 근거규정이 방송법에 있습니다. 근거규정 자체가 달리 되어 있고, 공공채널은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익채널은 공익성과 사회적인 필요성을 고려해서 방통위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한 채널로 법령상 개념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여기 보니까 '공교육 보완 교육지원'인데 이것은 민간의 일반PP 중에 교육을 전문편성하는 PP를 공익채널로 선정한다는 뜻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이경재 위원장

- 그런데 교육방송도 공교육 보완, 평생·직업 교육 이렇게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EBS도 공익방송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KBS, EBS 이런 것은 공공채널입니다. 그렇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성격상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래서 공적기관에서 출연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아리랑TV도 그렇고 국가 예산으로 경영되는 것들은 공공채널인데, 또 종편이나 또는 보도채널들은 특수하게 대부분 의무송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채널이라 함은, 바로 공공채널은 방통위 소관사항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일반PP들이 전부 미래부에 가 있는데, 공익채널이라는 것

을 또 만들어서 그 심사는 우리가 하계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법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용어를 잘 모르고 그냥 뒤섞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소속의 관할권도 왔다 갔다 되어 있고, 이번에 공익채널 선정과 관련해서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존대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공채널과 공익채널, 공익채널과 장애인채널 이런 규정들이 뒤범벅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부와 협의를 해서 기본적으로 분류를 정확히 하고, 그 소관부서를 정확히 해서 법 개정을 전부 새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성규 상임위원**

- 동의합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말씀 그대로인데, 작년에 장애인채널이 들어온 것은 국회의원을 뽑을 때 장애인을 배려하는 것과 유사한 취지로 장애인 채널도 입법적 배려가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를 좀 도와주자,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약자의 배려...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공익채널의 사회복지 분야에 사회적 소수자 복지가 있으니 거기에서 장애인채널을 승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익채널과 별도로 또 장애인복지채널로 되어 있으니 이것이 정치인의 요구에 의해 하나하나씩 자꾸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 체계 자체가 아주 혼돈스러워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일단 공익채널의 심사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대로 하되, 다음에는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개인적으로 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공공채널과 공익채널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공공채널은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그다음에 정부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직접적 운영비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익채널은 콘텐츠 중심으로 구성해 놓고, 그리고 공익채널 안에 장애인복지채널이 또 들어와서...,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하면 출산과 아동방지법 안에 또 들어오면 이것은 따로 떼어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 법들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법령의 차이에 따라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 1차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논의에서 유일한 차이는 장애인 전문가 1명이 기존 심사위원 7명에 1명이 더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은 청소년 전문가 1명이 더 들어와야 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면 노인복지 전문가 1명이 더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1개밖에 선택을 못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할 때에는 섞어 넣어라, 녹여서 넣고, 두 번째 공공채널과 공익채널과 관련된 전체적인 개념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13년 전에 만든 개념이고 그 당시에도 급하게 만든 개념이었기 때문에 지난 13년 동안에 거의 진지하게 이 개념과 혜택들을 검토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성과는 어떤 것이 있었으며, 그다음에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

는지도 우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도 한 번도 검토해 본 적이 없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시의적절하게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공공·공익채널 운영 13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재조정·재구성해서 체계적인 개념과 체계적인 법적 지원들을 할 것인가를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문제제기했고,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재구성해 나가는데 사무국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관련해서 이 문제가 진척이 되려면, 미래부가 PP를 관장하는 문제도 있어서 국(局)에만 맡겨서는 진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연구반 편성을 확정하고, 연구반장은 연혁과 내용을 입체적으로 잘 파악하시는 양문석 위원님이 수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김충식 부위원장님은 양문석 위원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려고 하는데 이것은 부처 간의 경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리랑TV는 옛날 공보처에서 만들었고 지금 예산도 민간 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정부가 100% 기금을 대고, 또 운영은 방송통신기금으로 해서 민간적이지 않고 대외적인 한국에 대한 홍보적 차원인데 이것을 민간 일반PP로 넣어서 공익으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KTV도 역시 공보처에서 만들어서 지금 정부에서 모든 예산이 다 나오는데, 또 편성에 관해서는 미래부에서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국회방송이 국회 예산으로 공공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정치인들이 다 나오고 정치적 민감한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데 일반PP를 다루는 데서 다루고, 지금 이런 것까지 전부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처의 이기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리고 또 공익채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위상으로는 민간의 일반PP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O에서 어떻게 배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같이 얹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전부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케이블협회가 아마 제일 잘 알 것 같아서 미래부, 방통위 이렇게 우선 연구반을 만들고 누가 주관하자는 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인선이 되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습니다.

7. 보고사항

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경재 위원장

- <보고사항 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안건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위치정보법의 개요는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정보사업자는 사람 또는 사물의 위치정보를 자체적으로 수집해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로, 방통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현재 109개 사업자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수집한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방통위에 신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588개 사업자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법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 번째, 위치정보 사업 진입규제 완화입니다. 현재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은 사람의 위치정보인지, 사물의 위치정보인지 관계없이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않아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는 사업자는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허가·신고 의무를 면제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업의 허가 등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도입입니다. 이것은 사업의 허가, 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분할 인가, 사업의 휴지·폐지 승인에 있어 허가 심사 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만을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매회 즉시 통보” 규정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사업자가 이용자 “본인의 위치정보”를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본인에게 매회 즉시 통보해야 하는데, 본인이 미리 요청하는 경우 일정 기간 모아서 통보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현재 긴급구조기관에서 위치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신고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긴급구조기간이 범원행정처의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직접 온라인으로 조회하여 신속하게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 및 시정조치 근거 마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중지 등을 위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은 오늘 의결이 되면 9월~10월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하고, 이것이 끝나면 10월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제개혁 심사, 법제처 심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1>번, <3>번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1>번, <3>번을 좀 더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십시오. 개인정보 침해의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언뜻 이 내용 전체적으로 집중해서 듣지 않고 보지 않으면 위치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침해에 대한 기본적인 방어벽들이 어떤 것이 있

는지를 잘 모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개인정보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 **반상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첫 번째,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는 사물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허가와 그다음에 사물의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기반서비스사업자의 신고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버스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수집해서 버스정류장에 보시면 '5분 뒤에 몇 번 버스가 도착할 것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버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데 대해 현재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상관없이 단순히 버스의 위치정보를 수집해서 버스정류장에 알려주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면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매회 즉시 통보" 규정 완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용자가 본인의 위치정보를 본인이 지정한 제3자, 여기에서 제3자는 주로 가족이나 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부모가 학생의 위치정보를 수집했을 때 현재는 학생에게도 어머니가 당신의 위치를 추적했다는 것을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매회 즉시 통보이기 때문에 엄마가 10분 간격으로 예를 들어 찾으면 10분 간격으로 학생의 휴대폰에 SMS 문자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같은 경우 수업시간에 계속 문자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학생이 사전에 통신사업자 등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하루 또는 일주일 이렇게 학생이 지정한 기간에 모아서 통보할 수 있게끔 규제 완화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 편익을 고려해서 법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연인 간의 사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 **반상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연인 간이라도 추적을 당하는 사람이 일정한 기간을 지정하기 때문에 본인이, 나는 추적할 때 건별로 통보해 달라고 했을 경우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연인이 위치를 추적하는 것을 하루에 한 번씩만 받겠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어쨌든 이 부분들이 사물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규제완화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여전히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반상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맞습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도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현재는 위치정보사업자는 모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이 전부 면제로 가면 예를 들어 어떤 사업자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정부가 파악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 완전히 끈을 놓아버리면 혹시라도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만큼 대처도 늦어지고 현황 파악도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저도 제기했습니다. 어차피 이런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 민간에 활력을 도입하고 창의성을 제고한다는 그런 취지에 맞춰서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정부에서는 생길 수 있는 지금 양 위원님도 염려하셨던 바와 같이 발생 가능한 우려에 대해 이것은 주기적으로 시장을 체크해 보거나 전체적으로 민원사례의 분석을 통해 나중에라도 보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미리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19 긴급구조서비스에 대해서도 직접 위치정보 조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가 회의석상에서 요청을 받아서 검토를 통해 이것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고 이야기했던 사안인데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은 긴급재난 구조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제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이경제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 날짜는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이경제 위원장

- 이상으로 제3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폐회】